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1
------	----

2022. 9. 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8월 16일, 김기덕 의원(찬성자 27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9.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기덕 의원)

1. 제안이유

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서울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의 대상 구체화
(안 제5조제2항).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현재 서울시에서 제작 중인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이하 “홍보물 등”)의 사전 심의 절차를 효율화하여 시민들에게 빠른 정보제공을 가능하게 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개정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와 서울시 소속 행정기관이 대내·외적인 특정사항 및 홍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성을 보장하고자 1995년 제정되어 시행 중임.
- 1995년 제정 당시의 동 조례는 서울시 간행물에 관한 심의와 보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1999년부터는 “간행물”의 범위를 CD, 영상물 등으로 확장하였고, 2009년에는 “홍보물·영상물”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여 현재의 간행물(서울시 발행부서의 정기간행물, 서울시사, 단행본)과 구분하여 사용 중임.
-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의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개최건수가 줄어들면서 다소 줄어들었으나, 2022년 신입

시장의 부임에 따른 서울시의 정책 변화 및 신규정책 수립에 따른 홍보, 예견하지 못한 재난·재해로 인해 대시민 긴급 안내가 중요해진 사회적 인식에 따라 향후 증가해 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3년간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 홍보물심의위원회(소위원회 포함)

(’22. 8월말 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홍보물심의위원회	18회 / 308건	20회 / 244건	10회 / 142건
디자인심의(소위원회)	19회 / 200건	25회 / 190건	12회 / 117건
영상물심의(소위원회)	12회 / 102건	13회 / 95건	8회 / 38건

○ 홍보물 유형별 자료(심의안건 기준)

(’22. 8월말 기준)

구분	2020년(441건)	2021년(381건)	2022년(272건)
홍보물 (포스터, 리플릿, 브로슈어, 전단지 등)	192	195	157
영상물	125	98	46
간행물* (책자, 백서, 도록 등)	124	88	69

○ 동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의 모든 홍보물 등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작 필요성, 중복성, 공공성 등을 사전 심의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조례 제5조는 서울시의 홍보물·영상물 제작 및 간행물 제작·발행의 경우 사전 심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2항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 법령에서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등은 사전 심의 대상에 제외하고 있음.

- 한편 동 개정안의 경우, 조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심의 대상에 △최초 발간 시 심의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과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을 추가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를 줄이고,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의 제작·발행에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추가되는 대상의 경우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유사한 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기실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심의위원회 심의 효율화로 인해 시민들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61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기덕 의원	2022. 8.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대상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아래 조항을 신설, 추가하는 것임 4. 최초 발간시 심의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5.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 				
추진경과	○ 2022. 8.16.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조례 제5조(사전심의 의무 등) 제2항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홍보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개정조례안은 사전심의 비대상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쟁점사항은 없음				
대응방안	○ 해당 없음				
상 임 위 처리결과	○				
향 후 계 획	○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팀장	윤선재(☎2133-6425)	담당	박초롱(☎2133-6429)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1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8월 16일
발 의 자: 김기덕 의원(1명)
찬 성 자: 곽향기, 김영옥,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혜지,
문성호,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환희, 서준오,
소영철, 송경택, 심미경,
윤영희, 이병운, 이소라,
이승복, 이영실, 이종태,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의원(27명)

1.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서울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의 대상 구체화(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최초 발간 시 심의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5.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전심의 의무 등) ① (생 략)</p> <p>② (생 략)</p> <p>1.~3.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4.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p>	<p>제5조(사전심의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u>최초 발간 시 심의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u></p> <p>5. <u>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u></p> <p>6.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p>